

일본의 회계감사인에 대한 징계기준 지침

정보신청기관 : 공인회계사회

I. 징계기준 지침 개관

1. 지침의 제정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공인회계사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하, 개정법)에 의하여 과징금제도, 업무개선명령, 유한책임 감사법인 제도 및 특정사원 제도 등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서 개정법에 근거하여 공인회계사 및 감사법인의 징계처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공인회계사·감사법인에 대한 징계처분」(이하, 구처분기준)을 개정한다. 추가적으로 징계처분의 결정에 있어서는 개별적인 사안에 관하여 내용 및 배경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가지 특성 및 특징과 관련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각각의 사안에 대응한 적절한 징계처분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기준의 기본적인 입장

구처분기준의 기본적인 입장은 공인회계사·감사법인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① 허위증명·부당증명에 대한 징계처분, ② 법령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2가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사유마다 “기본이 되는 처분의 양정”을 정하고 개별사정과 주변사정 등에 의하여 기본이 되는 처분을 가중 또는 감경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위반행위의 형태와 이에 대응한 처분의 양정 및 가중·감경 사유에 대해서는 별지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서 공인회계사·감사심사회(동법 제41조의 2에 규정하는 권고에 근거하는 경우는 제외)의 의견을 경유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3. 허위증명·부당증명에 대한 징계처분

(1) 감사법인에 의한 허위증명·부당증명

① 기본이 되는 처분 양정

㉔ 사원이 고의로 허위증명·부당증명을 한 경우
과징금(감사보수의 1.5배) + 계약의 신규
체결에 관한 업무정지 1년 + 업무개선 명령
또는 업무정지 3월

㉕ 사원이 상당한주의를 게을리하여 허위증명·
부당증명을 한 경우
과징금(감사보수의 1배) + 계약의 신규체
결에 관한 업무정지 6월 + 업무개선 명령
또는 업무정지 1월

② 처분의 입장

감사법인의 사원이 허위증명을 한 경우, 해당
사원이 소속하는 감사 법인에 대한 처분

㉔ 경제적인 부담을 부과하는 것으로 허위증
명을 억제 예방 : 과징금

㉕ 업무집행사원에 의한 허위증명을 발생시킨
업무집행시스템 등에 대한 감사법인으로서
의 문제점을 장래를 향하여 개선 : 업무개선
명령

㉖ 일정한 기간 업무형태의 확대를 금지 : 계약
의 신규체결에 관한 업무 정지

③ 예외적인 처분

㉔ 사안의 중대성, 감사법인의 내부관리시스
템미비 등으로 해당 감사법인에 대하여 감사
업무를 계속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존 업무를 포함하여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㉕ ㉔의 경우 또는 해산명령처분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감사법인에 대하여 충분한 경제
적 손실의 부과를 위한 과징금은 명하지 않
는 것을 기본적인 입장으로 하지만, 사안이
지극히 중대하고 악의적인 경우에는 과징
금을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추
가로 개별적인 사정과 주변 사정 등에 의하
여 처분을 가중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산명령으
로 처분할 수도 있다.

한편, 처분을 감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을 감경하여 경우
에 따라서 형량선고로 할 수 있다. 또한, 감사법
인에 대해서 기존의 업무를 포함한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 대해서, 행위의 형태나 내부관리
시스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감사법인 전체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일부 또는 일부의 업무에
대해서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공인회계사에 의한 허위증명·부당증명

① 기본이 되는 처분의 양정

㉔ 고의적으로 행한 허위증명 : 등록 말소

㉕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한 허위증명·부당
증명 : 업무정지 6월

② 처분의 입장

공인회계사에 의한 허위증명에 대해서는 기
본적으로 구처분기준과 동일하게 고의적으로

행한 허위증명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한 허위 증명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를 기본적인 처분으로 한다.

③ 개인으로 감사계약을 체결한 공인회계사의 경우

④ 업무정지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 경제적 손실을 부과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위반행위를 억제한다.

⑤ 또한, 사안이 지극히 중대하고 악의적인 경우, 등록말소 또는 업무정지에 추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개별적인 사정 주변사정 등에 의하여 처분을 가중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정지 기간을 가중할 수 있다. 처분을 감경하는 것이 상당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기간을 감경하여 경우에 따라서 형량선고로 할 수 있다.

(3) 기타 사항

① 업무집행사원 이외에 중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사원이 있는 경우

심사담당자 등이 허위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경우와 같이, 업무집행사원 이외에도 허위증명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사원이 있는 경우, 감사법인에 대해서 해당 사원이 감사법인의 업무 또는 의사결정의 일부 또는 전부 관여를 금지할 수 있다. 의사결정에 대한 관여금지기간에 대해서는 원칙으로서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정지기간과 동일한 기간(상한 2년)으로 한다.

② 4분기리뷰(Review) 및 내부통제감사와 관련된 허위 증명

4분기리뷰 및 내부통제감사에 관련된 허위증명에 대해서는 감사절차나 의견표명의 방법이 기말의 재무제표 감사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처분의 필요 여부를 검토한다.

4. 법령위반에 대한 징계처분

(1) 공인회계사에 의한 법령 위반

① 공인회계사의 현저하고 부당한 업무운영 부당한 업무운영의 정도가 특히 중대한 경우 및 업무수행이 현저하게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업무정지를 기본으로 한 처분을 명한다.

② 공인회계사의 부정경리협력에 대한 처분 양정의 재검토

공인회계사에 의한 부정경리협력은 공인회계사 전체의 신용에게 주는 영향이 크고, 회계전문가로서의 지식을 악용한 행위이기 때문에, 기본이 되는 처분양정을 상향시킨다.

(2) 감사법인에 의한 법령위반

① 감사법인의 이해관계규정 위반, 사원에 의한 로테이션 위반, 감사업무 집행방법 위반, 업무관리체제정비 위반

감사법인의 내부관리시스템 등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기본이 되는 양정을, “형량선고”에서 “업무개선명령”으로 변경한다.

② 감사법인의 현저하게 부당한 업무운영 종래 업무전부의 정지 2년 또는 1년의 처분에

추가하여, 새롭게 “업무관리체제의 운용이 현저하게 충분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업무개선명령을 기본으로 한다.

③ 감사법인의 업무개선명령 위반

명령에 전혀 따르지 않는 등 중대한 업무개선명령 위반이 있는 경우, 업무의 전부 정지 2년을 기본으로 한다.

④ 감사법인의 신용실추행위

신용실추행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형태에 대응한 처분을 명한다. 감사법인이 조직적으로 중대한 신용실추행위를 한 경우에는 업무의 전부정지를 기본으로 한 처분을 명한다.

⑤ 유한책임감사법인에 대한 처분

부정수단에 의한 등록, 유한책임감사법인의 등록 후에 등록 거부 요건에 해당된 경우, 중대한 업무개선지시 또는 업무개선명령의 위반 등 개별적인 행위의 형태에 대응한 처분을 명한다.

5. 특정사원에 의한 법령위반

특정사원이 법령위반행위를 한 경우, 감사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정지한다. 업무종사의 정지기간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가 법령위반행위를 실시했을 경우의 업무정지기간과 동일하게 한다. 또한, 업무종사정지의 처분에 위반했을 때는 등록말소를 명한다.

II. 일본의 징계처분 양정기준

1. 허위증명·부당증명에 대한 징계처분

(1) 공인회계사(감사법인의 사원으로서 감사증명업무를 수행한 사람 포함)

① 기본이 되는 처분양정

징계근거	징계사유	관련조문	기본이 되는 처분 양정
허위증명·부당증명	고의적인 허위증명	제30조 제1항, 제31조의2	등록말소
	과실에 의한 허위증명	제30조 제2항, 제3항, 제31조의2	업무정지 6월

(주 1) 개인자격으로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공인회계사에 대해서, 업무정지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경제적 손실을 부과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로 판단되면 과징금의 부과를 검토한다.

(주 2) 사안이 지극히 중대하고 악의적인 경우에는 등록말소 또는 업무정지에 추가하여 과징금의 부과를 검토한다.

② 개별사정에 의한 가중·감경

항 목	내 용	가중·감경
허위증명 내용	○ 허위증명·부당증명의 대상(손익)금액의 자본금에 대한 비율 (예) 자본금에 대한 비율 1000% 이상 자본금에 대한 비율 100% 미만	가중 감경
	○ 허위증명·부당증명의 대상기간 - 장기(일반적으로 5년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 1기에만 해당되는 경우 - 중간감사에만 해당되는 경우 - 4분기리뷰에만 해당되는 경우 - 내부통제감사에 해당되는 경우	가중 감경 감경 감경 감경
	○ 감사의 형태 - 비상장공인회계사법상의 대회사 제외의 경우 - 임의 감사의 경우	감경 감경
행위자의 인식·행위 형태	○ 허위증명·부당증명에 대한 적극성·계획성 - 구체적인 계획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계획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경우	가중
	○ 은폐행위의 유무 - 감사조서를 수정·변경하여 은폐 행위를 한 경우 - 감사개요서에 감사실시상황에 대한 부실한 기재 한 경우	가중 가중
	○ 감사보수 이외에 보수로서 금품 등을 수령한 경우	가중
	○ 부정의 청탁을 받아 보수를 청구·약속한 경우	가중
	○ 종속적인 입장에서 수행한 경우	감경
	○ 허위 등의 사실을 지적하여 감사증명기간 동안에 “부적정 의견”, “의견불표명” 등의 의견을 제시한 기간이 있는 경우	감경
감사 상황	○ 과실의 정도 (감사절차) - 중대한 감사절차 위반 등에 의하여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가중
	○ 문제가 되는 항목에 대하여 법인의 내부규정 등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사회에 부의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심사를 의뢰하지 않은 경우	가중
	○ 기업에 의한 은폐행위가 있는 경우	감경
	○ 감사절차에서 차지하는 허위·부당증명의 비율 - 해당 절차 이외에 감사기준 등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감사를 수행했다고 인정된 경우	감경
	○ 감사 수행과정에서 내부통제의 상황 등 문제점을 지적하여 개선을 요구한 경우	감경
	○ 허위·부당증명의 주요 기간이 과거부터 반복되어, 신규 기간에 허위금액이 증가하고 있지 않은 경우	감경
시정 등 대응	○ (감사법인의) 직무, 감사증명 업무에서 사퇴하는 등의 대응을 하는 경우	감경
	○ 사실관계 파악 및 재발방지 등 적절한 대응이 취해지고 있는 경우	감경
형사사건으로서의 해당성, 사회적 영향도	○ 형사 소추되는 등 사회적 영향이 큰 경우	가중
기타	○ 상기에 기재 이외의 항목에 대하여 특히 고려하여 가중해야 할 항목이 있는 경우	가중
	○ 상기에 기재 이외의 항목에 대하여 특히 고려하여 감경해야 할 항목이 있는 경우	감경

(2) 감사법인

① 기본이 되는 처분의 양정

징계근거	징계사유	관련조문	기본이 되는 처분 양정
허위증명·부당증명	사원의 고의에 의한 허위 증명	제34조의21 제2항 제1호 제34조의21의2	과징금 + 계약의 신규체결에 관한 업무정지 1년 + 업무개선명령 또는 업무정지 3월
	사원의 과실에 의한 허위증명	제34조의21 제2항 제2호 제34조의21의2	과징금 + 계약의 신규체결에 관한 업무정지 6월 + 업무개선명령 또는 업무정지 1월
	업무집행사원 이외에 특히 책임을 부담하는 사원이 있는 경우	제34조의21 제3항	해당 사원의 감사법인 업무 또는 의사결정에 대한 관여 금지

(주 3) 사안의 중대성, 감사법인의 내부관리시스템 미비 등으로 인하여, 해당 감사법인에 대한 감사업무의 계속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존 업무를 포함한 업무정지를 명한다.

(주 4) 상기의 경우 또는 해산명령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기

본적인 처분이지만, 사안이 지극히 중대하고 악의적인 경우에는 상기한 처분에 추가하여 과징금의 부과를 검토한다.

(주 5) 기존 업무를 포함한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감사법인 전체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일부분 또는 일부의 업무에 대해서만 명할 수 있다.

② 개별 사정에 의한 가중·감경

항 목	내 용	가중·감경
허위증명 내용	○ 허위증명·부당증명의 대상(손익)금액의 자본금에 대한 비율 (예) 자본금에 대한 비율 1000% 이상 자본금에 대한 비율 100% 미만	가중 감경
	○ 허위증명·부당증명의 대상기간 - 장기(일반적으로 5년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 1기에만 해당되는 경우 - 중간감사에만 해당되는 경우 - 4분기리뷰에만 해당되는 경우 - 내부통제감사에 해당되는 경우	가중 감경 감경 감경 감경
	○ 감사의 형태 - 비상장(공인회계사법상의 대회사 제외)의 경우 - 임의 감사의 경우	감경 감경

내부관리의 형태	○ 품질관리 규정 및 시스템의 미정비 또는 불비에 의한 경우	가중
	○ 심사기구가 기능하지 않은 것에 의한 경우	가중
	○ 심사기구만의 책임을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 - 업무집행사원이 감사법인의 내부규정에 위반하여 심사회에 부의하지 않은 경우 - 업무집행사원이 감사법인의 내부규정에 위반하여 간단한 심사로 절차를 마친 경우	감경 감경
	○ 제규정에 근거하여 내부관리시스템이 확립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경
내부 규율의 형태	○ 내부 규율에 관한 규정·체제의 미정비 또는 불비에 의한 경우	가중
	○ 제규준에 준거해, 내부 규율이 확보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경
감사증명을 수행한 행위자	○ 행위자의 고의·과실 정도가 무겁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중
	○ 행위자의 고의·과실 정도가 가볍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경
	○ 행위자가 감사법인에 대하여 허위보고를 하는 등 은폐행위나 기망행위가 존재하여 감사법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경
시정 등 대응	○ 신속하게 감사법인내에서 조사를 실시하여 적절한 개선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경우	감경
	○ 사실관계 파악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대응이 취해지고 있는 경우	감경
형사사건으로서의 해당성, 사회적 영 향도	○ 형사 소추되는 등 사회적 영향이 큰 경우	가중
기타	○ 상기의 기재 이외의 항목에 대하여 특히 고려하여 가중해야 할 항목이 있는 경우	가중
	○ 상기의 기재 이외의 항목에 대하여 특히 고려하여 감경해야 할 항목이 있는 경우	감경

2. 법령위반에 대한 징계처분

(1) 공인회계사

① 기본이 되는 처분양정

징계근거	징계사유	관련조문	기본이 되는 처분 양정
공인 회계사법 위반	- 업무정지처분 위반	제31조	등록말소
	- 업무개선지시 위반	제31조	업무정지 2년
	- 업무제한 위반 (이해관계규정 위반)	제24조, 제24조의2	업무정지 1월
	- 로테이션 위반 - 동무승인(同無承認) 실시(피치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24조의3,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업무정지 1월 경고
	- 개인단독감사금지 위반	제24조의4	업무정지 1월
	- 비밀유지의무 위반	제27조 제52조	
	- 취 업제한 위반 - 동무승인(同無承認) 실시(피치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28조의2 제34조의14의2	업무정지 1월 경고
	- 징계조사검사 기피, 허위답변 등 보고 검사 기피(개인)	제33조 제55조 제1호 제49조의3 제53조 제1, 제2호	업무정지 1월
	- 증명범위 이해관계명시 위반	제25조	경고
	- 사용인 감독의무 위반	제28조의3	
	- 사원경업금지규정 위반	제34조의14	
	- 합병·청산절차 위반 (감사법인 사원)	제34조의20, 제34조의20의2, 제34조의22 제2항, 제3항, 제6항 등	
- 변경등록의무 위반, 해산·합병신고 위반, 등기의무 위반	제20조 제34조의6 제1항 제34조의18 제3항 제34조의19 제3항		
공인 회계사법 위반 (신용 실추행위 위반)	- 감사보조자로서의 업무 부적절 (1) 부정행위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것이 중대한 경우 (2) 감사절차 위반 등의 지시 위반의 경우	제26조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1월
	- 윤리 규정 위반 감사보수 이외의 금품을 수령한 것이 중대한 경우		업무정지 3월
	- 2조 2항 업무와 관련된 업무의 해태 (1) 형사소추의 대상 (2) 전혀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등 중대한 임무 해태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2월

공인 회계사법 위반 (신용 실추행위 위반)	- 세무사법 위반 [탈세방조, 탈세상담] (1) 세무사 업무 정지 6개월 이상 (2) 세무사 업무 정지 6개월 미만	제26조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1월
	- 자기 탈세 형사 소추의 대상이 된 경우 또는 세무사법 위반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 등 중대한 경우 (1) 부정소득 고액 (1억 엔 이상) (2) 부정소득 소액 (1억 엔 미만)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1월
	이른바 「명의대여」 (주)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시켰을 때		업무정지 2월
	- 부정경리 협력 (1) 형사소추의 대상 (2) (1) 이외의 경우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6월
	- 상기 이외의 26조의 규정 위반 중대한 신용 실추행위의 경우		업무정지 3월
공인 회계사법 위반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	- 특히 중대한 경우 (예) 품질관리의 방침 등이 부존재	제31조 제2항	업무정지 2년
	- 중대한 경우 (예) 심사기능이 완전하지 않은 경우 감사업무수행체제가 완전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1년
	- 업무수행이 현저하게 불충분 (예) 광범위한 감사절차 위반		업무정지 1월

② 개별 사정에 의한 가중·감경

항 목	내 용	가중·감경
행위자의 인식	○ 위장행위를 수행하는 등 계획적 또는 악의성이 높은 행위인 경우	가중
	○ 행위를 수행한 것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경
	○ 과실에 근거한 행위이며 정상참작이 인정되는 경우	감경
행위자의 형태	○ 위반 등의 상태가 장기간에 지속된 경우	가중
	○ 상습적으로 반복된 경우	가중
	○ 위반 등의 행위가 일시적 또는 단기간인 경우	감경
	○ 종속적인 입장에서 수행한 경우	감경
시정 등 대응	○ 감사법인의 직무 사퇴 등의 대응을 하고 있는 경우	감경
	○ 사실관계 파악에 진지하게 임하는 등의 대응을 하고 있는 경우	감경
형사사건으로서 형사소추되는 등 사회적 영향이 큰 경우 가중사유 해당성, 사회적 영향도	○ 형사소추되는 등 사회적 영향이 큰 경우	가중
	○ 감사법인의 직무자 등 책임있는 지위에 있는 자의 행위로 사회적 영향이 큰 경우	가중
기타	○ 상기의 기재 이외의 항목에 대하여 특히 고려하여 가중해야 할 항목이 있는 경우	가중
	○ 상기의 기재 이외의 항목에 대하여 특히 고려하여 감경해야 할 항목이 있는 경우	감경

맞춤형 법제정보

(2) 감사법인

① 기본이 되는 처분의 양정

징계근거	징계사유	관련조문	기본이 되는 처분 양정
공인 회계사법 위반	- 업무정지처분 위반	제34조의21 제2항 제3호	해산명령
	- 업무개선명령 위반	제34조의21 제2항 제3호	업무정지 2년
	- 업무개선지시 위반	제34조의21 제2항 제4호	업무정지 2년
	- 감사법인성립신고 위반	제34조의9의2	업무정지 1월
	- 사원 징계조사검사 기피, 허위 답변 등 - 보고검사 기피	제34조의21 제4항 제55조 제1호 제49조의3, 제53조	
	- 업무제한 위반 [이해관계규정 위반]	제34조의11 제34조의11의2	업무개선명령
	- 사원 로테이션 위반	제34조의11의3 제34조의11의4 제34조의11의5	
	- 업무 관리체제 정비 위반 - 감사업무 집행방법 위반	제34조의13 제34조의12 제1항	
	- 감사법인 정관변경신고 위반, 업무보고서제출 의무 위반, 해산·합병신고 위반, 등기의무 위반	제34조의6 제1항 제34조의10 제34조의16 제34조의18 제3항 등	경고
	- 증명범위 이해관계 명시 위반	제25조, 제34조의12 제3항	
	- 사용인 감독의무 위반	제28조의3 제34조의14의3	
공인 회계사법 위반 (신용 실추 행위 위반)	감사법인의 신용을 실추시키는 행위 (중대한 경우) - 자기탈세 형사소추 대상이 되었을 경우 등 중대한 경우 (1) 부정소득 고액 (2) 부정소득 소액	제34조의13 제5항	형태에 따라 형량선고 또는 업무개선 명령 등
	- 이른바 「명의대여」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1월
	- 상기 이외의 중대한 신용 실추 행위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3월
공인 회계사법 위반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 특히 중대한 경우 (예) 품질관리방침 등 불비	제34조의21 제2항 제3호	업무정지 2년
	중대한 경우 (예) 심사기능의 불완전 감사증명업무 수행체제 불완전		업무정지 1년
	업무관리시스템 운용이 현저하게 불충분한 경우		업무개선명령

공인 회계사법위반 (유한 책임 감사 법인의 위반 행위)	- 등록 거부 사유에 해당	제34조의29 제2항	업무개선명령 일부업무정지 (개선될 때까지)
	- 부정 수단에 의한 등록		유한책임감사법인의 등록말소
	- 업무개선명령 위반		업무정지 2년
	- 업무개선지시 위반		업무정지 2년

② 개별 사정에 의한 가중·감경

항 목	내 용	가중·감경
내부 관리의 형태	○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시스템의 미정비 또는 불비한 경우	가중
	○ 제규정에 근거하여 내부 관리시스템이 확립되어 있다고 인정된 경우	감경
내부 규율의 형태	○ 내부 규율에 관한 규정·시스템의 미정비 또는 불비한 경우	가중
	○ 제규정에 근거하여 내부 규율이 확립되었다고 인정된 경우	감경
행위 등의 형태	○ 위반 등의 상태가 장기간 지속된 경우	가중
	○ 상습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경우	가중
	○ 위반 등의 행위가 일시적 또는 단기간인 경우	감경
	○ 종속적인 입장에서 위반한 경우	감경
행위자의 상황	○ 행위자의 고의·과실의 정도가 무겁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중
	○ 행위자의 고의·과실의 정도가 가볍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경
	○ 행위자가 감사법인에 대하여 허위보고를 하는 등 은폐행위나 기망행위가 존재하여 감사법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경
시정 등 대응	○ 신속하게 법인내에서 조사 등을 실시하여 적절한 개선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경우	감경
	○ 사실관계의 파악 및 재발방지 등을 위한 적절한 대응이 취해지고 있는 경우	감경
형사사건으로서의 해당성, 사회적 영향도	○ 형사소추되는 등 사회적 영향이 큰 경우	가중
	○ 감사법인의 직무자 등 책임있는 지위에 있는 자의 행위로 사회적 영향이 큰 경우	가중
기타	○ 상기의 기재 이외의 항목에 대하여 특히 고려하여 가중해야 할 항목이 있는 경우	가중
	○ 상기의 기재 이외의 항목에 대하여 특히 고려하여 감경해야 할 항목이 있는 경우	감경

맞춤형 법제정보

(3) 특정 사원

① 기본이 되는 처분 양정

징계근거	징계사유	관련조문	기본이 되는 처분 양정
공인 회계사법 위반	- 감사법인의 업무종사 정지처분 위반	제34조의10의 17 제2항	등록말소
	- 비밀준수의무 위반	제34조의10의16	감사법인의 업무 종사 정지 1월
	- 변경등록의무 위반	제34조의10의13	경고
	- 사원경업금지규정 위반	제34조의14	
공인 회계사법 위반 (신용실추 행위)	- 감사보조자로서의 업무 부적절 (1) 부정행위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것이 중대한 경우 (2) 감사절차위반 등의 지시 위반 경우	제34조의3 제5항	감사법인의 업무 종사 정지 6월
	- 윤리규정 위반 금품수령 등 중대한 경우		감사법인의 업무 종사 정지 1월
	자기 탈세 형사소추 대상이 되었을 경우 등 중대한 경우 (1) 부정 소득 고액 (2) 부정 소득 소액		감사법인의 업무 종사 정지 3월
	이른바 「명의대여」		감사법인의 업무 종사 정지 3월
	부정경리 협력 (1) 형사소추의 대상 (2) (1) 이외의 경우		감사법인의 업무 종사 정지 1월
	상기 이외의 중대한 신용 실추 행위		감사법인의 업무 종사 정지 6월
		감사법인의 업무 종사 정지 3월	

② 개별 사정에 의한 가중·감경

항 목	내 용	가중 · 감경
행위자의 의식	○ 위장행위를 시도하는 등 계획적 또는 악의성이 높은 행위인 경우	가중
	○ 행위를 수행한 것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경
	○ 과실에 근거한 행위로 정상참작이 인정되는 경우	감경
행위자의 형태	○ 위반 등의 상태가 장기간에 지속된 경우	가중
	○ 상습적으로 반복된 경우	가중
	○ 위반 등의 행위가 일시적 또는 단기기간인 경우	감경
시정 등 대응	○ 종속적인 입장에서 수행한 경우	감경
	○ (감사법인의) 직무, 감사증명 업무에서 사퇴하는 등의 대응을 하는 경우	감경
형사사건으로서의 해당성, 사회적 영향도	○ 사실관계 파악 및 재발방지 등 적절한 대응이 취해지고 있는 경우	감경
	○ 형사소추되는 등 사회적 영향이 큰 경우	가중
기타	○ 감사법인의 직무자 등 책임있는 지위에 있는 자의 행위로 사회적 영향이 큰 경우	가중
	○ 상기의 기재 이외의 항목에 대하여 특히 고려하여 가중해야 할 항목이 있는 경우	가중
	○ 상기의 기재 이외의 항목에 대하여 특히 고려하여 감경해야 할 항목이 있는 경우	감경

[상기표의 적용에 관한 주의사항]

□ 상기표에 구체적인 적용사항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기표의 내용 중 가장 유사한 행위의 예에 의한다.

□ 복수의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처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수단이나 결과인 행위가 다른 처분사유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본이 되는 처분양정이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명한다.

○ 2 이상의 처분을 명해야 할 행위에 대하여 추가적인 처분을 명할 때에는 기본이 되는 처분양정이 가장 무거운 행위에 적절하게 가중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복수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간적·장소적 관련성이나 행위형태의 유사성 등을 근거로 하여, 전체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단일한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 「개별사정에 의한 가중·감경」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항목·내용을 감안하여, 그 정도에 따라서 업무정지의 기간, 처분형태(등록말소·해산명령 ↔ 업무정지 ↔ 업무개선명령(감사법인

에 한정) ↔ 형량선고)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 과거의 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의 처분 현재 명해지는 처분에 상당하게 가중한다.

○ 과거의 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

과거의 처분 등의 경중에 따라 가중정도의 차이를 계산한 후, 현재 명해지는 처분에 상당하게 가중한다.

○ 다른 법령에 위반하고 있는 경우

위반의 정도에 대응하도록 가중한다.

□ 개별사정·주변사정 등을 고려한 결과, 「등록말소」 또는 「해산명령」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각각 「등록말소」 또는 「해산명령」으로 처분을 명한다.

□ 개별사정·주변사정 등에 의하여 감경한 결과, 처분 자체를 명하지 않은 것과 같게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감사법인의 내부 관리 형태 및 내부 규율의 형태가 제규정에 근거하고 있는지에 관한 인정 여부는 공인회계사협회의 품질관리리뷰결과 등에 대한 공인회계사·감사심사회의 모니터링을 참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 상황도 참조하는 것으로 한다.

III. 징계처분 양정기준에 대한 일반 의견과 금융청의 입장

일반 의견	일반 의견에 대한 금융청의 입장
○ 조치결과 양정 전체에 대한 의견	
<p>공인회계사 법의 개정에 의하여 과징금, 업무개선명령 등의 조치가 가능해져서 처분의 선택사항이 다양화되었으며, 또한 처분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도 가능해졌지만, 개별적인 처분이 조합되어 중복적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종전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에 과중하게 집행될 가능성이 발생하게 된다.</p>	<p>과거의 처분기준에 대해서도 징계처분 등이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종의 징계처분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반영되었고, 이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현재에도 변함없이 유지되기 때문에 과거의 처분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이 지금의 처분기준에 대해서도 유지되도록 집행한다.</p>
<p>예외적인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등록말소처분에 추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과 감사법인에 대해서 해산명령처분에 추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처분의 중복은 결과적으로 처분의 상한을 높이고 있으며, 처분정도의 강화를 의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p>	<p>과징금은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부과하는 것으로 위법행위의 억제를 위한 제도이다. 처분기준상의 이와 같은 처분내용은 과거 기준에서 가졌던 취지와 동일한 취지를 가지고 있으며, 처분정도의 강화를 의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각오하면서, 부당하게 높은 감사보수를 취득하려는 경우와 상황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취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예외적인 처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지극히 악의적인 경우에 등록 말소 등과 병과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대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p>
<p>감사법인의 업무 정지 처분에 대하여 과거의 처분기준에서는 감사법인 전체에 대한 처분이 아니고, 일부 또는 일부의 업무에 대해서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취지가 명시되고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처분기준에서는 이 점이 분명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감사법인의 허위 증명·부당 증명의 경우에 일부의 업무정지 또는 감사계약의 신규체결에 관한 업무 이외의 업무에 대한 일부정지가 종전의 경우와 같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p>	<p>현행 기준은 과거 처분기준의 기본적인 입장을 변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전과 동일하게 감사법인의 기존업무에 대한 일부를 정지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처분대상이 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 이러한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감사법인의 기존 계약과 관련되는 업무를 정지하는 경우에 일부분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현행 기준에도 추가하기로 한다.</p>
<p>개별적인 공인회계사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의 업무정지 또는 경제적 손실을 부과함으로써, 사회적 또는 실질적으로 공인회계사로서의 신뢰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부정에 대한 억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고의의 허위증명 등”에 대하여 등록말소의 조치가 아니라, 업무 정지 2년 이내 또는 일정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p>	<p>공인회계사는 감사 및 회계의 전문가로서 독립된 입장에 있어야 하며, 재무에 관한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투자자 및 채권자의 보호 등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공인회계사가 기업의 재무제표에 허위의 기재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재무제표에 허위의 기재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공인회계사의 증명을 신뢰하여 거래 등을 시도하는 투자자 및 채권자의 보호에 중대한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업무정지가 아니라 등록말소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p>
○ 계약의 신규체결에 관한 업무정지	
<p>이러한 조치는 일정기간 동안 업무형태의 확대를 금지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 계약의 신규 체결에 관한 업무정지”에 의하여 금지하는 업무를 감사에 제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p>	<p>상기의 지적을 고려하여 감사법인에 의한 업무형태의 확대를 금지한다고 하는 취지를 명확하게 하여, 감사 이외의 업무에 대해서도 계약의 신규체결에 관한 업무가 금지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취지를 추가한다.</p>

<p>허위증명·부당증명에 대한 감사법인의 처분에 대하여, “과징금+감사계약의 신규체결에 관한 업무정지+업무개선명령”이 기본적으로 구조로 되어 있지만, “감사계약의 신규체결에 관한 업무의 정지”에 대해서는 그 대상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예를 들면, 기존계약에 밀접하게 관련된 계약의 신규체결(기존 계약당사자인 회사가 분할된 경우 등), 기존계약의 갱신, 신규 상장 고객에 대한 기존의 임의감사계약을 금융상품거래법상의 감사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 등, 기존의 계약체결 회사가 지난 연도 재무제표를 소급하여 수정할 때에 필요하게 되는 감사를 수행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면 기업측에 대하여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p>	<p>개별적인 사안마다 각각의 사정에 부합되도록, 정지되는 업무와 제외되는 업무를 구분하여 명확한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계약의 신규체결에 관한 업무정지는 일정기간 동안 감사법인의 업무형태에 관한 확대의 금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존의 감사계약 갱신과 마찬가지로 업무형태의 확대에 연결되지 않고, 해당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선의의 피감사회사에게 영향이 큰 경우에 대해서는 금지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언급된 4종류의 계약체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금지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필요성이 적은 업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계약이 처분 직전에 급하게 체결된 경우에는 언급된 업무라고 하더라도 기존 계약에 관련된 업무라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또한, 계약의 신규체결에 관한 업무란 새로운 보수의 획득을 위해서 특정 기업에 대한 업무내용을 설명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만, 광고 등과 같이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법인의 업무내용 전체를 표시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p>
<p>○ 유한책임 감사법인에 대한 처분</p>	
<p>유한책임 감사법인이 등록 후에 등록거부 사유에 해당된 경우, 업무개선명령과 함께 개선까지 기간사이의 일부 업무정지처분을 기본인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이는 과도한 처분으로 판단되며, 업무개선명령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된다.</p>	<p>유한책임 감사법인제도는 재산적 기반의 확보 등을 통하여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으로 원칙으로 하면서, 최저자본금 제도나 공탁금 제도를 제도적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해당 재산적 기반의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채 유한책임 감사법인으로서 새롭게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부적당하다.</p>
<p>○ 특정사원에 대한 처분</p>	
<p>특정사원의 기본이 되는 처분양정에 있어서 윤리규정위반(금품의 수령 등 중대한 경우)이 있는 경우, 업무중사정지 1월로 처분하는데, 공인회계사의 경우에는 업무정지 3월로 처분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만 기간을 다르게 취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p>	<p>이 점에 대하여 특정사원과 공인회계사를 다르게 취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사원의 윤리규정위반(금품의 수령 등 중대한 경우)에 대하여 공인회계사의 경우와 같이, 감사법인의 업무중사정지 3월로 처분을 추가한다.</p>
<p>○ 처분의 과중 감경에 대해</p>	
<p>과거의 조치기준에도 있었던 사항인데, 형사소추된 것을 이유로 처분을 가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처분을 가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p>	<p>징계처분 등은 금융청이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법령위반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행위의 악의성이나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처분하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확정판결 전에 징계처분 등을 결정할 수도 있다. 공인회계사 등이 형사소추되었을 경우, 감사의 신뢰성 등에 대하여 미치는 사회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가중요건으로서 추가된 것이다.</p>
<p>○ 기타</p>	
<p>일본 공인회계사협회의 자율규제기능 강화 때문에 중대한 회칙위반을 반복하는 경우에 대하여 법령위반에 대한 징계처분 등의 사유에 추가할 것이 검토되어야 한다.</p>	<p>공인회계사법상 공인회계사는 일본 공인 회계사협회의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일본 공인회계사협회는 회원에 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을 때는 그 사실을 금융청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본 공인회계사협회의 회칙위반이 공인회계사 전체의 신용을 실추하는 “중대한 신용실추행위”에 해당되는 경우로 판단하여, 이를 근거로 한 처분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p>

이 준 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